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4년 3월 11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14년 3월 12일

라. 상정일자 : 2014년 3월 20일

제18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유 영 명

나. 제안이유

-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구미시 시세 조례」 제14조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지역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을 추가 고시코자 함

다. 주요내용

-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 도시계획구역으로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 중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1조에 정한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
-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대상 : 12.438km²

- 선산읍 : 3개리 0.820km²(죽장, 화조, 독동리 일부지역)
- 해평면 : 7개리 6.593km²(낙성, 오상, 문량, 괴곡, 금산, 도문, 월호리 일부지역)
- 산동면 : 3개리 3.767km²(동곡, 도중, 적림리 일부지역)
- 장천면 : 2개리 1.258km²(하장, 신장리 일부지역)

라. 참고사항

- 「지방세법」 제112조, 제116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1조
- 「구미시 시세 조례」 제14조, 제15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2조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박 성 애

○ 본 안건은

-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하기 위해 사전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12조 및 「구미시 시세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 추가 고시지역은

- 선산읍 : 3개리 0.820km²(죽장, 화조, 독동리 일부지역)
- 해평면 : 7개리 6.593km²(낙성, 오상, 문량, 괴곡, 금산, 도문, 월호리 일부지역)
- 산동면 : 3개리 3.767km²(동곡, 도중, 적림리 일부지역)
- 장천면 : 2개리 1.258km²(하장, 신장리 일부지역)
- 총 1개 읍 3개 면 15개리 일부지역 **12.438km²**가 도시지역으로 새로이 편입됨.

○ 검토결과

- 본 안건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구미시 시세 조례」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구미시 고시로 고시된 선산읍 일원, 해평면, 산동면 하이
테크밸리 산업단지, 장천면 도시 지역에 대하여 「구미시 시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및 구미시 시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추가지정 됨으로써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은 고시하도록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생 략
-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